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48
----------	-------

발의연월일 : 2026. 4. 20.

발 의 자 : 김석기 · 김용태 · 김태호
성일종 · 신동욱 · 박정하
민홍철 · 권영진 · 배준영
김도읍 · 임이자 · 박수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 · 직선화 · 복선화 · 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는 실질적으로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전국적으로 분포한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 등의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유재산특

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6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 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23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36. 12. 31.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